
학습지원대상학생 지원협의회 규정



장훈고등학교

학습지원대상학생 지원협의회 규정

(2025.03.01. 시행)

연구기획부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기초학력 보장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학습지원대상학생의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학습지원대상학생지원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기준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학교는 학습지원대상학생의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습지원대상학생 지원협의회(이하 협의회)를 둔다.

제3조(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학교장, 부위원장은 교감(교감 미배치교는 학교장이 지정한 교원), 위원은 연구기획부장, 학습지원 담당교원, 학년부장, 담임교사, 보건교사 등 7인 내외로 학교 실정에 맞게 구성한다.

제4조(임무와 임기) ① 위원장은 학습지원대상학생의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 유고시 위원장을 대행한다.

② 협의회에서는 학교의 학습지원대상학생 지원과 선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③ 간사는 학습지원 담당교원으로 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당해 학년도로 한다. 단,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운영) ① 협의회 회의는 학습지원대상학생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심의, 학습지원대상학생 추가 선정 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시,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시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협의회 회의를 통해 매 학년도 시작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학습지원대상학생을 선정하고, 학습지원대상학생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여 학습지원교육대상학생의 지원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힘쓴다.

③ 위원장은 매 학년도의 시작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학습지원대상학생 지원협의회를 통해 학습

지원대상학생 선발을 완료해야 한다. 다만, 입학·편입학·전학 등의 사유로 새로 학생에게 학습지원교육이 필요하다고 학교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2개월이 지난 후에도 학습지원대상 학생을 추가로 선정할 수 있다.

④ 협의회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 이상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 동수일 때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⑤ 협의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⑥ 협의회 심의 결과는 위원들의 확인을 받아 기록 보관하고, 학교장 결재를 득한 후 시행한다.

⑦ 협의회는 학교의 형편에 따라 타 위원회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6조 (심의내용) 협의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한다.

- ① 학습지원대상학생 선정
- ② 학습지원대상학생의 지원 방향 및 개별 계획
- ③ 학습지원대상학생의 향상도 점검 및 결과에 따른 향후 지원 계획 점검
- ④ 그 외 학습지원대상학생의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제반 사항

제7조(운영세칙) 이 규정 외 협의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의결을 거쳐 따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 이 규정은 202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